

# 퇴직연금감독규정

<목 차>

1. 퇴직연금내 사모발행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등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우근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자본시장국장		연락처	02-2100-2661
	과장	자산운용과장		이메일	kenyoon@korea.kr

2023. 06. 01.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퇴직연금내 사모발행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등 신설		
	2.규제조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10조제4항, 제15조의4, 제23조제1항제7호		
	3.위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8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가목, 제34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6.02~2023.07.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사모 파생결합사채 등이 퇴직연금시장에서 규제회피 용도 등으로 악용됨에 따라, 시장 교란 관행으로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관행은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지는 바, '22년말부터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사항이며, 규제의 대상인 업계에서도 규제 신설을 요청중인 사항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발행 파생결합사채 판매를 금지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소위 “비사업자”)에도 판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의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시장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간 머니무브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간이형 규제로서 비용편익 분석 대상에 미해당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p> <p>가. ~ 라. (생략)</p> <p><u>&lt;신설&gt;</u></p>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 ----- ----- ----- -.</p> <p>1.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u></p>
<p>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lt;신설&gt;</p>	<p>제10조(이해상충방지 등) ④ <u>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4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u>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u>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p> <p>7. <u>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u></p>	<p><u>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u></p> <p>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u>퇴직연금사업자</u>----- ----- ----- <u>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u> -----.</p>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 ----- ----- -----.</p> <p>7. <u>퇴직연금제도별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u></p>

현 행	개 정 안
<u>제도별로 자신이 제공(다른 퇴직 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 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별 금리</u>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사모 파생결합사채 등이 퇴직연금시장에서 규제회피 용도 등으로 악용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 내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행위로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영업 관행은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우려
  - 특히, '22년말 단기자금시장 불안 및 금리급등 상황에서 심각한 출혈경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인 금융기관도 해당 행정지도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시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허용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퇴직연금시장 내 판매를 <b>금지하지 않고</b>,</li> <li>○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b>미적용 지속</b></li> </ul>
규제대안 (現 감독규정 개정안)	대안명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퇴직연금시장 내 판매를 <b>금지하고</b>,</li> <li>○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b>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b>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b>동일하게 적용</b></li> </ul>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진행 예정

### 3. 규제목표

- 일부 금융기관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모 파생결합사채 등을 제조·판매하여,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
- 금융기관 간 출혈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자산 안정성 저하 우려 완화 및 퇴직연금발 머니무브가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 소위 변칙 파생결합사채로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

→ 최근 연금기능 강화를 고려하는 추세와 부합(연금개혁은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하는 규제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 타법사례

자본시장법(§33, §58)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업무보고서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율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동일기능-동일 규제” 원칙 강화와 불건전 과당경쟁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사안 →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23.6월 중 규정변경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퇴직연금시장의 금융기관 간 과잉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와 이에 따른 근로자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규제 집행을 통해 퇴직연금가입자인 절대 다수 일반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